

부산광역시사하구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안이유

종전의 재난관리법이 폐지되고 재해 및 재난 등으로 이원화 되어 있는 재난관련법령의 주요내용을 통합한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 새로이 제정 [2004. 3. 11 법률 제7188호로 공포]됨에 따라 조례제정이 요구됨

2. 관련법령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11조

3. 주요골자

가.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안 제2조) :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 부산광역시사하구(이하 “구”라 한다)지역에 있어서의 안전관리정책의 심의 및 총괄·조정

- 구의 안전관리계획 심의

- 구의 안전문화운동추진계획 심의 등

나. 위원회의 구성(안 제3조)

-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산광역시사하구청장이 된다.

-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 위원의 임기(안 제4조)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라. 위원장의 직무(안 제5조)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회무를 통할한다.

마. 실무위원회(안 제7조)

위원회에 부의될 의안을 사전검토하고 관계기관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는등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4. 검토의견

본 조례 제정건은

- 종전의 재난관리법이 폐지되고 2004. 3. 11부로 법률 제7188호에 의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주민의 생명·신체·재산에 위해가 되고 있는 태풍·지진·테러등 각종 위해로부터 안정성 확보와 대응체계를 구축 신속하게 실현코자함은
-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전문화 의식 함양에 크게 기여하고 행복과 안녕을 추구하는 헌법정신에 비추어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되며
- 특히 관련법령에 안전관리위원회 설치규정이 명문화 되어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위 조례 제정건은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됨.

2004년 12월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정 금 배